

【 7 】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2009. 3. .
제 출 자 양 주 시 장

□ 제정이유

-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여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중소기업, 금융기관, 공장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지원대상은
 -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체로 함. (안 제3조)
- 융자조건은
 -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퍼센트 낮게 함.
다만,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이율이 4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함. (안 제4조)
-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계획 수립 및 공고하도록 정함. (안 제5조)

- 융자절차는
 -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 심사기준 및 융자순위 결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7조)

- 융자금의 상환은
 - 기간만료일에 전액 상환하여야 함.
 - 융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상환기간 전에 융자금의 상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변경사항 통보 및 사후관리
 - 융자받은 업체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
 -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9조 내지 제10조)

- 보고 등
 -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가 융자금 지원에 관한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없이 시장에 보고하여야 함.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200,000천원

- $200,000,000\text{원} \times 2\% \times 50\text{개업체} = 200,000\text{천원}$

사전예고기간

1. 예고기간 : 2008. 11. 25. ~ 2008. 12. 14. 까지(20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등
3. 예고결과 : 의견없음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100분의 30이상 영위하는 업체
 2.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② 융자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공장설립 인·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업체당 이자보전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2퍼센트 낮게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이율이 4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융자한도·융자조건 및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융자우선 순위를 정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융자지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간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서 기간만료일 전에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 연장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일반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차액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4조제1항에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휴·폐업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체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양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산업경제과
일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산업경제과장 김 병 렬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업지원팀장 유 상 현
	담당자 성명·전화	김 정 순 820-2416

관계법령 발췌서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 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1]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증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별표 2] <개정 2005. 12. 27>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300분의 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